

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 
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【최봉희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4. 11. 1.

행 정 위 원 회  
전 문 위 원

#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경 과

의안 제415호로 2024년 10월 14일 최봉희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4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영등포구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영등포구의 공공자금 운용의 공정성,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목적,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- 다.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라. 공공자금 운용 원칙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- 마.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바. 의회 제출 및 실적 공개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사. 교육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#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  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, 「지방회계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- 다. 입법예고(2024.10.17.~2024.10.22./5일간): 의견 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##### ○ 본 제정조례안은

공공자금의 체계성을 확립하여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, 향후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,

##### ○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2조(정의)는 관계법령의 용어를 적용하여 “공공자금”과 “금고”를 규정함.
- 안 제5조(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)는 공공자금 운용을 위한 “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”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함.
- 안 제7조(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)는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음을 규정함.
- 안 제8조(의회 제출 및 실적 공개)는 “금고운용 보고서”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,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을 규정함. 다만,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제출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를 명시함.

○ 검토결과

- 우선, 본 조례안의 입법 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관계법인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1호제사목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<sup>1)</sup>에서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, 행정관리개선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사무로 볼 수 있으며, 「지방재정법」 제3조(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)제1항<sup>2)</sup>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에 자치법규 제정이 가능하다고 하겠음.

※ 우리 구(區) 공공자금(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) 현황

금고 현황	공공자금 현황
우리은행 영등포구청점	일반회계(1), 특별회계(4), 기금(14)

- 아울러, 공공자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건전재정주의(지방자치법 제137조) 및 엄정관리주의(지방재정법 제36조)의 기본원리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으며 지방의회는 재정 준칙 준수 여부를 감시할 폭넓은 재정감독권을 가지고 있기에 매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

1)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 
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
2) 제3조(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,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에 따른 “금고운용 보고서”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(안 제8조)은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여지며,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에 근거하여 “지방재정 운용사항(참고자료 참조)”을 주민에게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 아울러, 7개 지방자치단체(서울특별시 강북구, 계룡시, 광양시, 양양군, 임실군, 함안군, 해남군)에서 “금고운용 보고서”(재무 건전성 평가, 자금관리 현황, 예금과목별 금액 및 잔액, 예치기간, 수익률, 이자수입 총액)를 홈페이지 혹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고 있기에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 및 홈페이지에 제출 혹은 공개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짐.
- 종합해 보면, 우리 구(區)에서 운용하고 있는 “일반회계”, “특별회계”, “기금”을 묶어 “공공자금”으로 정의하여 운용의 효율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이자 수입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
## 2 지방재정법

제3조(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,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60조(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.

1. 세입·세출예산의 운용상황(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)
2. 재무제표 3. 채권관리 현황 4. 기금운용 현황
5.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. 지역통합재정통계
7.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경영정보
8. 중기지방재정계획
9. 제36조의2 및 「지방회계법」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.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
- 10의2.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
11.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

12.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
13.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
14. 투자심사사업, 지방채 발행사업, 민간자본 유치사업, 보증채무사업의 현황
15.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
  - 가. 교부현황 나. 성과평가 결과
  - 다.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
  - 라.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
1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

###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

제17조(금고운용 보고) ① 구청장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반·특별회계·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반기별로 보고토록 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, 예치기간, 금융상품별 수익률,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매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